

	법률동향	2026. 3. 31.(화) 법무과장 윤재순(☎32030) 법무행정팀장 최윤미(☎33724) 주무관 김덕영(☎33235)
---	---------------	---

4월 주요 시행 법령

- 개별소비세법 -

[시행 2026. 4. 1., 2026. 4. 24.] [법률 제21206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한 경감세율을 50퍼센트로 적용하고, 궐련·파이프담배·전자담배 등의 정의규정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를 추가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며, 폐기 담배가 제조장 또는 담배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5호, 2026. 2. 27.,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담배가 제조장이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의 공제·환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합성니코틴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날인 2026년 4월 24일로 정하고, 개별소비세의 공제·환급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문화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3. 1.] [법률 제20671호, 2025. 1. 21., 제정]

◇ 제정이유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기회를 늘리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등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 2)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제11조의2제4항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더 높은 공제 금액을 적용받는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확대(제14조제2항)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거주자 1명당 총 3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확대함.
- 4)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1) 연구개발시설의 일시적 사업화를 위한 사용 허용(제21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2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웹툰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정함.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제80조의3)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폐업 등 소득공제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 중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추정 예외 사유 추가(제93조의8제8항 신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액을 추정하지 않도록 함.

3)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제93조의11 신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청년미래적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다자녀가구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제95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등이 3명 이상인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가 해당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확대(제98조의8)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함.

3) 생계형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제99조의14 신설)

채납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생계형채납자의 요건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절차 등을 정함.

마.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상법」 등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배당금의 합계액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해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 비율을 종전의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분리과세 특례의 요건(제104조의24 신설)

특례배당소득을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는 금액으로 정하고, 배당성향 계산 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요건을 정함.

- 도로교통법 -

[시행 2026. 4. 2.] [법률 제20864호, 2025. 4. 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약물 운전 및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등 약물 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 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도록 함(제45조).

나.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제82조).

다.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함(제93조).

라. 약물 운전 또는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함(제148조의2제4항).

마. 약물 운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제148조의2제5항).

바.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8조의2제6항).

- 도로교통법 -

[시행 2026. 4. 2.]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면서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는바,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이러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4. 2.] [법률 제20880호, 2025. 4. 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의 적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소유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동복지법 -

[시행 2026. 4. 2.] [법률 제20885호, 2025. 4. 1.,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되, 아동학대의 재발 등의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대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의료 및 상담지원과 자산관리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시설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4. 3.] [법률 제21164호, 2025. 12. 2.,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가 중요사항의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고려하여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되, 동일 건축물 중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이돌봄 지원법 -

[시행 2026. 4. 23.] [법률 제20932호, 2025. 4.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 가.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칭함(제2조).
- 나.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근거를 규정함(제6조 및 제6조의2).
- 다.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제7조).
- 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9조제2항제3호).
- 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육아도우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제10조의2).

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근거를 규정함(제11조의5 신설).

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 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담배사업법 -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의 규제에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을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며, 몰수와 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려는 것임.

○ 국회 접수 의안 확인(국회)

<http://likms.assembly.go.kr/bill>

○ 중앙부처 입법예고 내용 확인(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